

정책연구보고 P54/ 2002. 12.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논의 동향과 과제

임 송 수 부연구위원

머 리 말

2002년 12월 현재 WTO 농업협상은 세부원칙(modality)을 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가운데 국내보조 분야는 회원국들의 다양하고도 상이한 농업정책 수단과 목표에 관해 공통의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개도국과 선진국의 협상 제안은 그 입장에 따라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들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보조 감축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수출국들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에 대한 큰 폭의 감축 또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특히 수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보조 조치가 국제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감한 농정개혁을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이 WTO 농업협상에서 다뤄진 국내보조에 관한 주된 논의와 주요 회원국별 제안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감축대상 보조와 관련 주요 회원국들이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국내 영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UR)의 규범 채택이 우리나라의 농정개혁에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의 결과도 국내 농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상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02. 12.

요 약

- WTO 농업협정 아래 국내보조는 크게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허용 보조(green box),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S&D box), 생산제한 아래 허용 보조(blue box) 등으로 분류됨.
- 2002년 12월 현재 세부원칙(modalities)을 정하는 농업협상에서 WTO 회원국들은 특히 감축대상 보조의 추가 감축 방식과 목표에 관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감축대상 보조에 관한 논의는 주로 AMS(aggregate measure of support)에 대한 감축 방식과 목표 설정에 대한 것으로 UR 방식에 의한 점진적인 감축과 downpayment 방식(이행 첫해에 큰 폭으로 AMS 수준을 감축하는 방식)의 급진적인 감축, 그리고 농업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양허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 등이 제안됨.
 - 감축대상 보조에 포함되나 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AMS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에 관해서는 이 조치의 유지와 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총 AMS의 감축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것은 UR 방식의 점진적인 감축이지만, UR 방식이더라도 그 감축률이 높은 경우(예: 50%)엔 downpayment 방식과 같이 큰 폭의 AMS 감축 결과를 나타냄.
- AMS 감축 규모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모든 품목 대상의 보조를 통합한 총 AMS 감축 방식과 품목별로 AMS를 설정해 감축하는 방식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음.

- 그러나 품목별 AMS 감축 방식은 여건 변화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키는 등의 탄력적인 농정 조치 도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불리함.
- 농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예: 5%)로 총 AMS를 양허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 AMS 감축의 이행기간을 단기(예: 9년에서 5년으로)로 줄여 설정하는 것은 AMS 감축 폭을 확대하는 것(연평균 수치로 환산한 결과)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중장기적인 농정 수단이나 목표를 설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De minimis 규정이 강화되어도(예: 품목별 생산액 대비 10%에서 5%로) 현행 총 AMS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품목별 AMS 구조는 주로 농업 생산액 대비 1% 이하 또는 10%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1%~10% 사이로 새로운 de minimis 기준이 설정되어도 그 순 영향은 크지 않게 됨.
- De minimis가 폐지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보조가 현행 총 AMS 산출에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감축대상 AMS 수준은 지금 수준보다 큰 폭으로 늘게 됨.
- 기술적인 문제로 현행 총 AMS 산출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은 이론이나 논리 측면에서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임.
 - 현행 총 AMS 산출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실질 AMS는 명목 AMS 보다 더욱 커져 AMS 감축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에 유리함.

- 현행 총 AMS 산출에서 실제 수매량 대신에 관리가격의 수혜 대상물량 (eligible to receive the applied administered price)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AMS 감축 폭은 크게 늘어날 것임.
- 관리가격에다 실제 수매물량을 곱해 현행 AMS를 산출하는 기존의 방식은 WTO 패널에 의해 잘못된 방식이라고 판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WTO 기준의 적용은 우리나라의 AMS 양허 수준 이행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목 차

1. 국내보조에 관한 개념과 배경	1
1.1. 개념	1
1.2. 국내보조 박스별 범위	1
2. 국내보조 분야별 주요 쟁점	3
2.1. 국내보조 분야 협상의 방향과 목표	3
2.2. 분야별 주요 쟁점	3
2.3. 종합 평가 및 전망	10
3. 시나리오별 국내보조 감축의 국내영향과 시사점	13
3.1. 시나리오 설정	13
3.2. 시나리오별 국내보조 감축의 영향	16

표 목 차

표 1. 앰버 박스와 관련된 세부원칙 및 주요 제안	5
표 2. 블루 박스와 관련된 세부원칙 및 주요 제안	6
표 3. 그린 박스와 관련된 세부원칙 및 주요 제안	8
표 4. S&D 박스와 관련된 세부원칙 및 주요 제안	9
표 5. AMS 감축에 관한 시나리오 설정	15
표 6. 품목별 AMS 감축에 관한 베이스라인	19
표 7. 시나리오별 연간 AMS 감축 폭과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	21
표 8. 농림업 생산액 기준에 따른 AMS 감축 시나리오	23
표 9. 연도별 de minimis 활용 현황	24
표 10. De minimis 폐지가 총 AMS에 미치는 영향	26

그림 목 차

그림 1. AMS 감축 시나리오의 영향	17
그림 2. 베이스라인과 AMS 감축 시나리오별 차이	18
그림 3. 베이스라인과 품목별 AMS 감축 시나리오의 차이	22

1. 국내보조에 관한 개념과 배경

1.1. 개념

- WTO는 신호등의 색깔에 맞춘 이른바 ‘박스(box)’에 따라 국내보조를 분류함.
 - 레드(red) 박스는 금지 보조, 앰버(amber) 박스는 감축 대상 보조, 그린 박스는 허용 보조임.
-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은 일반적인 WTO 방식보다 조금 더 복잡한 박스 형태를 규정함.
 - 레드 박스는 없음.
 - 생산을 제한하는 제도와 연계한 블루(blue) 박스가 허용됨.
 - 앰버 박스에서 그 감축 수준을 초과한 보조만이 금지됨.
 - S&D 박스는 개도국을 위한 예외 조치임.

1.2. 국내보조 박스별 범위

- 앰버 박스는 블루 박스와 그린 박스를 제외한 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 조치를 말하며 감축 대상임(제6조).
 - 앰버 박스에 속하는 보조는 가격 보조, 생산량과 연계한 보조 등임.
 - 앰버 박스는 농업 생산액의 5%(개도국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에 대해선 그 적용이 제한됨.
 -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시작 당시 최소 허용보조 이상의 보조를 제공하는 회원국은 모두 30개국으로 앰버 박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함(현재는 34개국이 총 AMS 감축 의무를 지니며, 그 밖의 회원국들은 최소 허용보조를 지켜야 함).
 - 앰버 박스 아래 특정 및 불특정 농산물에 대한 모든 보조는 총 AMS라는 단일 수치로 산출됨(제1조, 부속서 3&4).

- 블루 박스는 왜곡을 줄이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앰버 박스로서 농민이 생산량을 줄이는 조건 아래 지불되는 보조임(제6조 5항).
 - 블루 박스의 보조 조치에 대한 상한이 없음.

- 그린 박스는 무역을 왜곡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왜곡만을 가져오는 보조 조치로 정부 재정에 의한 지원과 가격 보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음(부속서 2)
 - 그린 박스는 보통 특정 농산물에 목표를 둔 제도가 아님.
 - 직접 소득보조는 현재의 생산 수준이나 가격과 연계되지 않아야 하고,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에 관한 조치도 그린 박스에 포함됨.
 - 그린 박스에 대한 보조 상한은 없으며, 각 조치별 특정 기준이 제시됨.

2. 국내보조 분야별 주요 쟁점

2.1. 국내보조 분야 협상의 방향과 목표

- AoA 제20조는 회원국들이 농산물 무역의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할 것을 명시함.
 - 개혁의 방향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조와 보호 수준의 상당하고 점진적인 감축(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s in support and protection resulting in fundamental reform)’임.
- 2001년 11월 카타르(Qatar)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와 그 선언문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의 목적을 확인 및 설명하고 협상 일정을 설정함.
 - 이에 따라 농업협상은 모든 연계된 협상과 함께 2005년 1월 말까지 일괄 타결의 형태로 진행됨.
 - 각료 선언문은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의 상당한 감축(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을 목표로 제시함.
 - 각료 선언문은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D 조치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교역적 사항(non-trade concerns: NTC)도 고려될 것으로 밝힘.

2.2. 분야별 주요 쟁점

가. 앰버 박스

- ① 보조 조치의 추가 감축은 UR과 같이 농업의 총 AMS와 품목별 AMS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등은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총 AMS의 감축 방식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케언즈 그룹 등은 AMS가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배정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가져온다고 대응함.
- ② 총 AMS 감축에 대한 기준은 UR 이행 최종연도의 양허 수준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행기간 가운데 대표적인 3년 동안 또는 1995-2000년에 실제로 활용했던 현행 총 AMS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③ AMS 산출 방식과 관련 물가상승률의 반영 여부에 대한 주장이 대립됨.
- 우리나라, 노르웨이 등은 물가상승률의 반영을 통해 회원국 사이에 이행 감축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과 호주는 이미 농업협정 제18조 4항이 ‘지나친 물가상승률 (excessive inflation rate)’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는 것은 농정개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
- ④ AMS 감축 방식과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됨.
- 우리나라, 일본, EU 등은 UR 방식에 따른 추가 감축을 주장했는데, 특히 EU는.
 - 미국은 농업 생산액의 5%까지 5년 동안 일정하게 감축할 것을 제안함.
 - 케언즈 그룹과 인도는 이행 첫해에 큰 폭으로 AMS를 감축하는 (downpayment) 방식을 주장함.
 - 노르웨이는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보조와 국내 식량안보용 농산물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한 보조 감축을 더 크게 할 것을 제안함.
- ⑤ De minimis 조치의 유지와 철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우리나라, 미국 등은 이 조치의 유지를 지지함.
 - EU, ASEAN, 요르단 등은 선진국의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르웨이, 아프리카 그룹 등은 개도국의 de minimis 적용에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⑥ 기타 사항으로 개도국들은 모든 종류의 보조를 하나의 박스로 통합하고 이를 농업 생산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보조만을 허용하도록 제안함.

⑦ 이행 기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미국이 5년의 이행 기간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제출함.

표 1. 앰버 박스와 관련된 세부원칙 및 주요 제안

세부 분야	세부 원칙(modalities)	주요 회원국별 입장
① 추가 감축의 특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AMS ▪ 품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EU, 폴란드 ▪ 케언즈 그룹, ASEAN
② 기준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이행 최종연도 양허 수준: 일본, EU, 미국, 인도 등
③ AMS 산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식의 명료화 또는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상승률의 반영 ▪ 찬성: 우리나라, 노르웨이 ▪ 반대: 미국, 호주
④ 감축 방식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 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방식: 우리나라, 일본 ▪ UR 방식으로 55% 감축: EU ▪ 농업생산액의 5%: 미국 ▪ downpayment 방식: 케언즈 그룹, 인도 ▪ 국내용과 수출용 구분: 노르웨이
⑤ De minimis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유지 또는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 우리나라, 미국 ▪ 선진국 수준 인하: EU ▪ 개도국 수준 완화: 아프리카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 방식 	-
⑥ 기타 규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보조 박스 신설: 쿠바 등 11개국
⑦ 이행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미국 ▪ 6년(선진국), 10년(개도국): EU

자료: WTO(<http://www.wto.org>), 농림부 내부자료

나. 블루 박스

- ① 블루 박스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이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폐지 또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블루 박스 조치를 활용하고 있는 EU, 노르웨이, 일본 등은 이 조치의 유지를 주장함.
 - 미국, 케언즈 그룹 등은 블루 박스의 철폐를 주장하고 인도는 해당 조치를 품목 불특정 AMS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② 블루 박스의 기준(제6조 5항)은 고정면적과 단수에 기초한 지불,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지불, 고정 사육두수에 대한 지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대한 제안은 거의 없는 상태임.
- ③ 블루 박스 조치에 의한 지불 규모 측면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임.

표 2. 블루 박스와 관련된 세부원칙 및 주요 제안

세부 분야	세부 원칙(modalities)	주요 제안
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의 유지 또는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 EU, 노르웨이, 일본, 우리나라 ▪ (최종) 철폐: 미국, 케언즈 그룹 ▪ 품목 불특정 AMS에 포함: 인도
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제한'과 관련된 기준의 유지 또는 명료화 	-
③ 기타 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의 상한 설정 ▪ 지불액 감축 	-

자료: WTO(<http://www.wto.org>), 농림부 내부자료

다. 그린 박스

- ① 그린 박스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제안은 거의 없음.
- 특히 개도국들은 그린 박스가 선진국만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원 대상의 범위 축소나 개도국에 대한 신축적인 조치 허용을 강조함.
- ②-1 그린 박스 조치의 범위는 농업협정 부속서 2에서 명시한 조치의 유지나 조정 또는 새로운 조치의 도입과 관련됨.
- 우리나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보상,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등 새로운 조치의 도입을 제안하고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보조에 대한 감축의무의 면제를 주장함.
 - EU는 환경보호, 농촌개발, 빈곤경감, 동물복지,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함.
 - 미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는 조치로 농가소득 안전망과 위험관리, 환경과 자연자원 보호, 농촌개발, 새로운 기술, 구조조정 등을 기존의 기준 아래 허용 조치로 인정할 것을 주장함.
 - 아르헨티나와 인도는 비연계 소득보조와 소득안전망 조치를 AMS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
- ②-2 그린 박스 조치별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는 지금의 기준에 대한 유지나 조정에 초점이 맞춰짐.
- 비연계 소득보조의 기준에 대해 일본은 기준연도의 변경 등 신축적인 조정을 제안한 반면에 호주는 기준연도가 현재와 상관이 없는 역사적인 것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소득안전망 보조에 대해 일본은 평균 농업소득의 30% 이상 손실 및 손실분의 최대 70%까지로 된 보상의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함.

- 자연재해 보조의 경우 일본은 생산량의 30% 이상 손실에 대한 기준 완화를 주장함.
- 탈농 보조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감축의무 부과를 주장함.
-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 보조에 대해 호주는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을 정해 이 요건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제안함.

③ 기타 규율은 그린 박스 조치의 총액에 대한 상한 설정 또는 지불액 규모의 감축에 관한 것임.

- 상한 설정에 반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헝가리, 멕시코, 터키 등임.
- 상한 설정에 찬성하는 회원국은 캐나다, ASEAN, 아르헨티나, 인도, 이집트 등인데 ASEAN은 선진국에 대해서만 상한 설정을 주장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상한 설정에 있어 개도국 우대의 확대를 주장함.

표 3. 그린 박스와 관련된 세부원칙 및 주요 제안

세부 분야	세부 원칙(modalities)	주요 제안
① 일반적인 규율	▪ 기본 기준 유지 또는 조정	-
② 감축의무 예외 조치		
②-1 범위	▪ 조치 분류의 유지 또는 조정 ▪ 새로운 조치 분류의 도입	▪ 새 조치 도입: 우리나라, EU ▪ 유지: 미국, 일본 ▪ 축소: 아르헨티나, 인도
②-2 기준	▪ 조치별 특정 조건 및 기준의 유지 또는 조정 ▪ 새로운 조치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 도입	▪ 완화: 우리나라, 일본 ▪ 강화: 호주, 아르헨티나
③ 기타 규율	▪ 총액의 상한 설정 ▪ 지불액 감축	▪ 반대: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미국 등 ▪ 찬성: 캐나다, ASEAN, 아르헨티나, 인도 등

자료: WTO(<http://www.wto.org>), 농림부 내부자료

라. S&D 박스

- ① S&D 박스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범위의 유지와 확대로 대변됨.
- 지금의 범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 나라는 EU, 케언즈 그룹, ASEAN, 터키, 멕시코, 아프리카 그룹 등인데, 특히 EU는 개발 목적의 보조에 대해 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쿠바 등과 인도는 개도국의 낮은 소득이나 자본 농가에 대한 품목 특정의 보조,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증대 보조, 국내에서 주곡의 운송 보조 등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것을 주장함.
- ② S&D 박스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유지를 주장하는 회원국은 케언즈 그룹, 아프리카 그룹, ASEAN, 터키 등임.

표 4. S&D 박스와 관련된 세부원칙 및 주요 제안

세부 분야	세부 원칙(modalities)	주요 제안
① 범위	▪ 유지, 조정 또는 정교화	▪ 유지: 케언즈 그룹, 아프리카 그룹, ASEAN, 터키 등 ▪ 확대: EU, 쿠바 등, 인도
② 기준	▪ 유지, 조정 또는 정교화	▪ 유지: 케언즈 그룹, 아프리카 그룹, ASEAN, 터키 등
③ 기타	-	-

자료: WTO(<http://www.wto.org>), 농림부 내부자료

2.3. 종합 평가 및 전망

가. 앰버 박스

- AMS 감축은 UR 방식 아래 총 AMS에 대한 점진적 감축과 downpayment 방식의 품목별 AMS 감축이란 극단의 사이에서 공방이 이뤄지고 있음.
 - 수입국들은 UR 때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국내보조 감축을 양허한 만큼 급격한 추가 감축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비교역적 사항(NTC)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수출용이 아닌 국내 소비용 농산물에 대한 보조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수출국들은 UR 방식을 이행한 결과 양허된 AMS를 통한 국내보조 개혁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개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큰 폭의 AMS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UR 방식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점진적인 AMS 감축과 품목 사이의 신축적인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임.
- 지금까지 논의 동향을 살펴볼 때, AMS 감축은 UR 방식의 유지, 품목별 AMS 양허 수준의 설정 및 downpayment 방식의 감축, 새로운 공식에 따른 감축 등으로 크게 나뉘어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방식이 세부 원칙(modalities)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공식은 미국과 중국이 제안한 것을 말하며 농업생산액을 기초로 한 AMS 양허 수준 설정임.

나. 블루 박스

- 블루 박스에 관한 논의는 이 조치의 유지나 철폐 쪽으로 의견이 모아

지고 있는데, 특히 이 조치를 활용하고 있는 회원국과 그렇지 않은 회원국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음.

- EU, 노르웨이 등 UR 이전부터 블루 박스 조치를 활용하고 있는 회원국과 최근에 이 조치(도작경영 안정제)를 도입한 일본은 이 조치의 유지를 주장함.
 -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은 이 조치가 전환기에 채택된 허용 보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블루 박스 조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일본과 같이 쌀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치의 유지에 찬성하고 있음.
 - 유럽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2002년 7월에 발표한 공동농업정책의 중간평가보고서(CAP-MTR)에서 블루 박스 형태의 소득 보조를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그린 박스 형태의 소득 보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EU는 블루 박스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그린 박스

- 개도 수출국들은 그린 박스 조치가 선진국만이 누리는 또 다른 형태의 보조라고 비판하면서 그 규모에 대한 상한 설정이나 규율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선진국들은 NTC나 새로운 관심사항의 반영을 위해 이 조치가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할 것을 주장함.
- 선진국 가운데 일부 조치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호주는 국내 보조의 90% 이상이 그린 박스 형태로 돼 있으나, 주로 정부의 일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큼.
- 그린 박스 조치의 규모에 대한 상한 설정을 주장하는 캐나다의 경우 이 조치가 국내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임.

- 우리나라는 NTC가 그린 박스에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의 확대를 주장함.
- 그린 박스에 대한 세부 원칙은 이 조치의 범위(새로운 조치의 추가 또는 기존 조치의 취소 등), 조치별 요건에 대한 규율, 전체 보조규모에 대한 규율 등 다양한 측면을 다뤄야 할 것으로 전망됨.

라. S&D 박스

- 거의 모든 회원국들은 개도국(DC)과 최빈 개도국(LDC)에 대한 우대 조치가 유지 또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선진국들은 개도국 우대조치가 우대조치 이상의 새로운 규범(개도국만을 위한 개발 박스(development box) 등)으로 발전하는 것에 반대를 나타냄.
 -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측면에 대한 우대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같은 개도국들의 주장은 S&D 박스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de minimis나 개발 박스 등으로 확대되는 것과 특정 품목과 연계된 보조의 허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부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우리나라는 농업과 농촌개발 목적의 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개도국으로서 수혜자 입장뿐만 아니라 개도국 편에서 협상의 흐름에 동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개도국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S&D 박스 관련 조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지금의 S&D 박스에 한정되지 않고 de minimis 허용 수준의 확대나 개발 박스의 도입 등 어떠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임.

3. 시나리오별 국내보조 감축의 국내영향과 시사점

3.1. 시나리오 설정

가. AMS 감축 시나리오

- 베이스라인(baseline-A)은 국내보조 감축이 UR 농업협정의 경우와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설정함<표 5>.
 - 총 AMS는 2004년 양허 수준을 기준으로 그 이후 9년 동안 모두 13.3%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지탱한다는 것을 뜻함.

- 총 AMS의 감축률과 관련한 것은 시나리오 {1}~시나리오 {3}까지임.
 - 시나리오 {1}은 총 AMS 감축률이 UR 때 선진국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행기간(2005-13년)에 총 20% 감소하는 것을 가정함.
 - 시나리오 {2}는 EU 제안을 조금 변경해 반영한 것으로 2005년부터 9년 동안 총 AMS 감축이 50% 이뤄진다는 가정임.
 - 시나리오 {3}은 케언즈 그룹과 일부 개도국이 주장한 downpayment 방식을 적용한 경우로 이행 첫해인 2005년에 총 AMS를 2004년 수준에서 50% 감축하고, 그 이후에 총 13.3% 감축하는 것임.

- 총 AMS 감축의 이행기간이 9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 시나리오 {4}~시나리오 {6}임.
 - 시나리오 {4}는 총 AMS 감축률 20%를 이행기간 5년(2005-09년)에 맞춰 적용한 것임.
 - 시나리오 {5}는 총 AMS 감축률은 50%를 이행기간 5년에 맞춰 적용한 것임.

- 시나리오 {6}은 이행 첫해인 2005년에 총 AMS를 50% 감축하고, 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총 13.3%를 감축하는 것임.
-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AMS 감축대상 품목별로 감축률을 설정한 경우는 시나리오 {7}~시나리오 {12}임.
 - 시나리오 {7}은 총 AMS 감축률 20%를 9년의 이행기간에 품목별로 적용한 것임.
 - 시나리오 {8}은 총 AMS 감축률 50%를 9년의 이행기간에 품목별로 적용한 것임.
 - 시나리오 {9}는 품목별로 이행 첫해에 총 AMS를 50% 감축하고 그 이후부터 2013년까지 총 13.3% 감축하는 경우임.
 - 시나리오 {10}은 품목별로 20%의 AMS 감축률을 이행기간 5년(2005-09년)에 맞춘 것임.
 - 시나리오 {11}은 품목별로 50%의 AMS 감축률을 이행기간 5년에 맞춘 것임.
 - 시나리오 {12}는 품목별로 이행 첫해에 AMS를 50% 감축하고, 그 이후부터 2005년까지 총 13.3% 감축하는 경우임.
- 시나리오 {13}은 미국이 제안한대로 농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총 AMS의 감축을 설정한 경우임.
 - 5년의 이행기간(2004-09년)에 1996-98년의 농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총 AMS의 비중이 5% 이하로 설정함.
 - 만약 농업 생산액의 5% 수준이 UR 최종 AMS 양허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표 5. AMS 감축에 관한 시나리오 설정

기 준	시나리오	AMS 감축률	이행기간	품목별 감축
베이스라인	-	13.3%	2005-13년	×
감축률 확대	1	20%	2005-13년	×
	2	50%	2005-13년	×
	3	2005년에 50%와 그 이후 13.3%	2005-13년	×
감축률 확대+이행기간 단축	4	20%	2005-09년	×
	5	50%	2005-09년	×
	6	2005년에 50%와 그 이후 13.3%	2005-09년	×
감축률 확대+품목별 감축	7	20%	2005-13년	○
	8	50%	2005-13년	○
	9	2005년에 50%와 그 이후 13.3%	2005-13년	○
감축률 확대+이행기간 단축+품목별 감축	10	20%	2005-09년	○
	11	50%	2005-09년	○
	12	2005년에 50%와 그 이후 13.3%	2005-09년	○
농업 생산액(1996-98년) 대비 5%	13	-	2005-09년	-

나. De minimis 조정 시나리오

- De minimis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UR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품목별 생산액 대비 5%, 개도국은 10%까지 감축대상 AMS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임.
 - 시나리오 {14}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개도국의 지위 아래 생산액 대비 10%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임.
 - 시나리오 {15}는 선진국과 같이 생산액 대비 5%의 기준을 적용하

16

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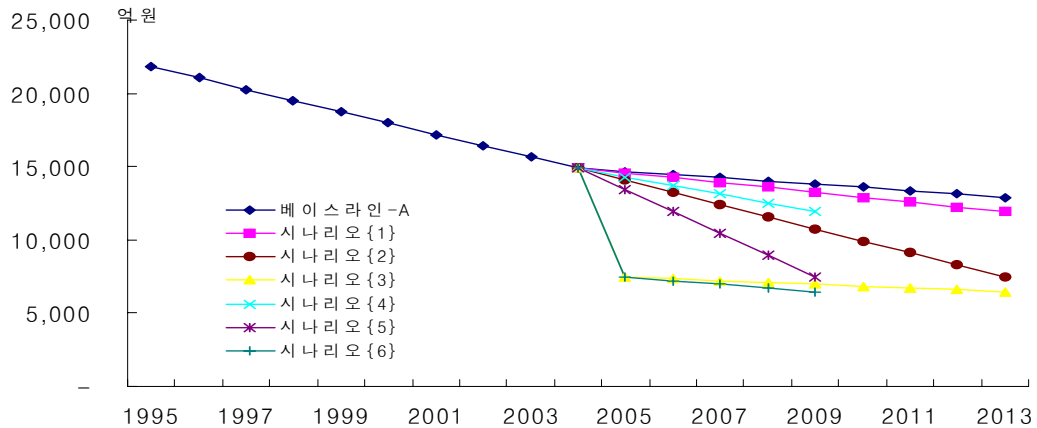
- 시나리오 {16}은 EU가 선진국에 제안한 것과 같이 de minimis를 폐지하는 가정임.
 - De minimis의 폐지는 AMS 산출에 포함되지 않던 품목 특정 및 품목 불특정 보조들이 AMS에 포함된다는 것을 뜻함.

3.2. 시나리오별 국내보조 감축의 영향

가. AMS 감축 시나리오의 영향

- 베이스라인 아래 총 AMS는 2004년에 1조 4,900억 원에서 2013년에 1조 2,919억 원으로 이행 기간에 모두 1,981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 총 AMS의 감소 폭이 UR 수준보다 적은 것은 2004년의 총 AMS 양허수준을 단일 기준으로 13.3%를 감축했기 때문임(UR 때에는 1989-91년 기준 총 AMS와 1993년 쌀의 AMS를 포함한 기준을 함께 사용해 총 AMS 양허 수준을 제시했음).
- 시나리오 {1} 아래 총 AMS는 2013년에 1조 1,920억 원으로 산출됨.
 - 해마다 321억 원이 감소해 2004년 수준보다 총 2,980억 원이 줄게 됨.
- 시나리오 {2}의 결과에 따르면 총 AMS는 해마다 828억 감소해 2013년에는 7,450억 원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3}에서 총 AMS는 이행 첫 해인 2005년에 7,450억 원으로 절반이 감소하고, 그 이후 해마다 124억 원이 감소해 2013년에 6,457억 원을 기록함.
- 시나리오 {4}에서 총 AMS는 이행기간 2005-09년에 1조 4,900억 원에서 1조 1,920억 원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해마다 596억 원이 줄어드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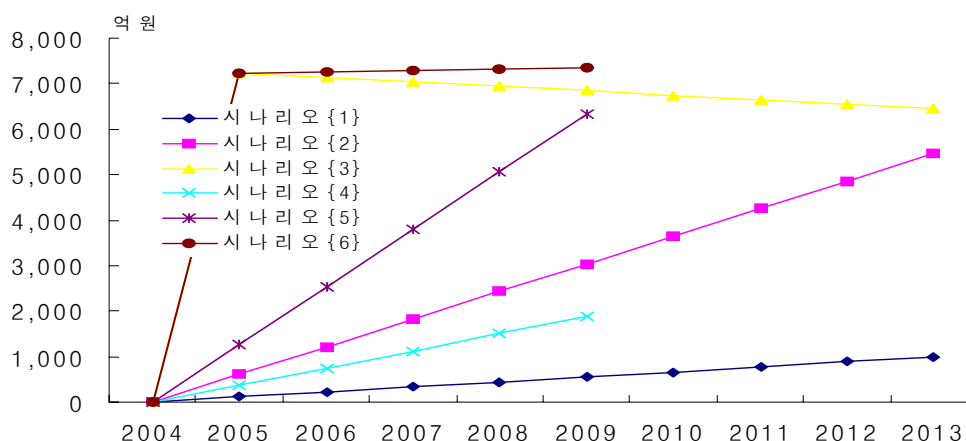
그림 1. AMS 감축 시나리오의 영향



- 시나리오 {5}에서 총 AMS는 해마다 1,490억 원이 감소해 최종 이행 연도인 2009년에 7,450억 원이 됨.
- 시나리오 {6}에서 총 AMS는 이행 첫 해인 2005에 7,450억 원으로 급감하고 그 이후부터 해마다 248억 원이 감소해 2009년에 6,457억 원을 기록함.
-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1}~시나리오 {6}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임.
 - 이행연도 2009년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과 격차가 가장 큰 것은 downpayment 방식을 가정한 시나리오 {6}으로 그 격차가 7,340억 원에 이름.
 - 이행연도 2009년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과 격차가 가장 적은 것은 UR 방식에 따른 AMS 감축률 20%를 적용한 시나리오 {1}로 그 격차가 522억 원을 기록함.

- UR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AMS 감축률이 50%로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다면 시나리오 {5}에서 2009년에 그 격차가 6,346억 원, 시나리오 {2}에서 5,463억 원 등 상대적으로 큰 폭의 총 AMS 감축이 불가피함.

그림 2. 베이스라인과 AMS 감축 시나리오별 차이



- 총 AMS에 대한 베이스라인(이행기간에 총 AMS 감축률 13.3%)를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품목 특정 AMS로 나누면 <표 6>과 같음.
 - 쌀의 AMS는 2004년부터 해마다 201억 원이 감소해 2013년에 최종 AMS는 1조 1,785억이 됨.
 - 보리의 AMS는 이행기간(2005-2013년)에 453억 원에서 395억 원으로 해마다 7억 원이 감소함.
 - 콩의 AMS는 이행기간에 632억 원에서 548억 원으로 해마다 9억 원이 줄어듦.
 - 옥수수의 AMS는 이행기간에 196억 원에 170억 원으로 해마다 3억 원이 감소함.

- 유채의 AMS는 이행기간에 2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해마다 3,000만 원이 감소함.

표 6. 품목별 AMS 감축에 관한 베이스라인

단위: 억 원

	총 AMS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기준연도	22,595	21,093	523	729	226	24
2004	14,900	13,598	453	632	196	21
2005	14,680	13,397	447	623	193	20
2006	14,459	13,195	440	613	190	20
2007	14,238	12,994	433	604	187	20
2008	14,017	12,792	427	595	184	20
2009	13,797	12,591	420	585	181	19
2010	13,576	12,389	413	576	179	19
2011	13,355	12,188	406	566	176	19
2012	13,134	11,986	400	557	173	18
2013	12,914	11,785	393	548	170	18

- 품목별 AMS 감축률이 20%인 시나리오 {7}의 경우 이행기간(2005-13년)에 쌀의 AMS는 1조 3,598억 원에서 1조 878억 원으로 감소하고, 보리와 콩은 각각 453억 원과 632억 원에서 363억 원과 506억 원으로 감소함.
- 품목별 AMS 감축률이 50%인 시나리오 {8}에서 쌀의 AMS는 2013년까지 6,799억 원으로 감소하고, 보리는 227억 원, 콩은 316억 원으로 줄어듦.
- 품목별 AMS가 downpayment 방식에 의해 감축되는 시나리오 {9}에서 쌀의 AMS는 2013년에 5,893억 원으로 감소하고, 보리와 콩은 196억 원과 274억 원으로 감소함.

- 품목별 AMS 감축률 20%이고 이행기간이 5년인 시나리오 {10}의 경우, 2009년에 쌀의 최종 AMS는 1조 878억 원이고, 보리와 콩은 각각 363억 원과 505억 원임.
- 품목별 AMS 감축률이 50%이고 이행기간이 2005-2009년인 시나리오 {11} 아래 쌀의 최종 AMS는 6,799억 원이고, 보리와 콩은 각각 227억 원과 316억 원임.
- Downpayment 방식의 품목별 AMS 감축인 {12}에서 쌀의 AMS는 2009년에 5,892억 원으로 감소하고, 보리와 콩은 196억 원과 274억 원으로 감소함.
- 시나리오별 연간 AMS 감소 폭과 이에 상응하는 가격지지 물량의 감소 상당치를 정태적으로 산출해 비교하면 <표 7>과 같음.
 - 가격지지 물량의 상당치는 품목별 2000년도 관리가격과 고정 참조가격을 반영해 산출함.
 - 총 AMS 대신에 연간 AMS 감축 폭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시나리오의 이행기간이 다른 것을 반영하기 위함임.
 - 연간 AMS 감소 폭이나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 측면에서 가장 감소 수준이 큰 경우는 시나리오 {12}이고, 시나리오 {11}과 시나리오 {9}가 그 다음을 차지함.
 - AMS 감소 폭이 가장 적은 것은 시나리오 {7}로 나타났으며, 이 때에 AMS 감축으로 줄여야 할 쌀 수매량은 2000년도 기준으로 연간 16,618톤으로 산출됨.
- 품목별 베이스라인과 품목별 AMS 사이의 격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음.
 - 2009년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과 그 격차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9},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8}, 시나리오

{10}, 시나리오 {7} 등의 순서임.

- 이러한 격차의 큰 순서는 총 AMS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던 시나리오 {1}~시나리오 {6}의 경우와 같음.

표 7. 시나리오별 연간 AMS 감축 폭과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

시나리오	연간 AMS와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베이스라인	연간 AMS 감소 폭(억 원)	201	7	9	2.9	0.3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톤)	11,079	978	613	569	51
7	연간 AMS 감소 폭(억 원)	302	10	14	4.3	0.5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톤)	16,618	1,465	919	852	77
8	연간 AMS 감소 폭(억 원)	755	25	35	10.9	1.2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톤)	41,546	3,667	2,297	2,134	190
9	연간 AMS 감소 폭(억 원)	856	29	40	12.3	1.3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톤)	47,084	4,156	2,603	2,418	216
10	연간 AMS 감소 폭(억 원)	544	18	25	7.8	0.8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톤)	29,913	2,640	1,654	1,536	137
11	연간 AMS 감소 폭(억 원)	1,360	45	63	19.6	2.1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톤)	74,783	6,601	4,135	3,841	343
12	연간 AMS 감소 폭(억 원)	1,541	51	72	22.2	2.4
	가격지지 물량 상당치(톤)	84,754	7,481	4,686	4,353	388

주: 1. Downpayment 방식인 시나리오 {9}와 시나리오 {12}의 경우 연간 AMS 감소 수준은 이행기간의 총 감소 폭을 단순 평균한 것임.

2. 가격지지 물량은 품목별 고정 참조가격과 2000년도 관리가격을 적용해 산출함.

○ 시나리오 {13}의 결과를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나타내면 <표 8>과 같음.

- 1996-98년에 명목 농림업 생산액은 각각 29조 520억 원, 30조 2,406억 원, 30조 7,483억 원이므로 이 기간에 농림업 생산액의 5%는 평균 1조 5,007억 원으로 산출됨.
- 그러나 농림업 생산액의 5%가 최종 AMS 양허 수준인 1조 4,900억 원보다 크기 때문에 이행기간 5년(2005-09년)에 새로운 최종 총

AMS는 1조 4,900억 원으로 고정됨.

- 베이스라인과 최종 AMS 사이의 차이는 2009년에 최대 1,104억 원으로 이는 베이스라인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임.

그림 3. 베이스라인과 품목별 AMS 감축 시나리오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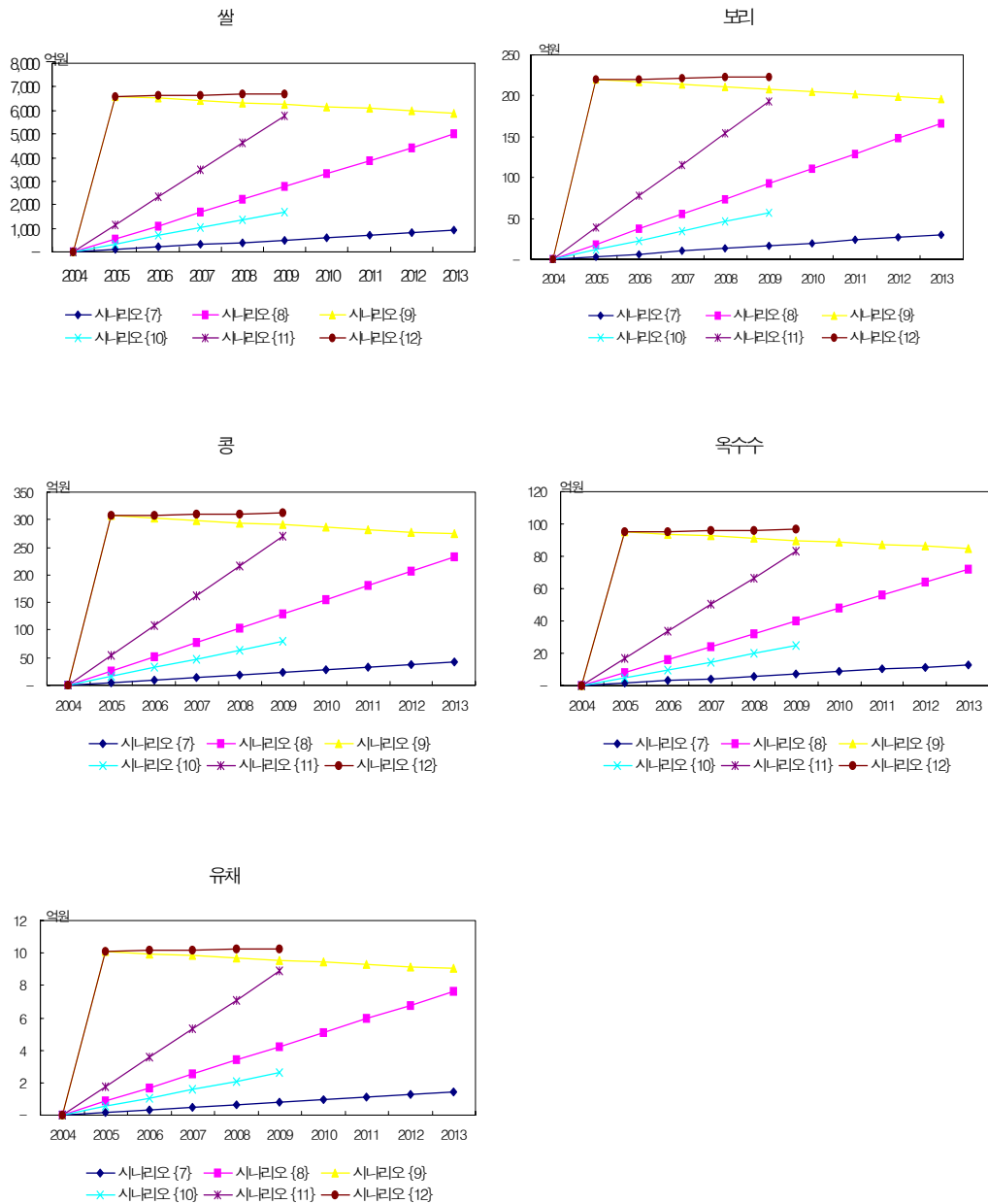


표 8. 농림업 생산액 기준에 따른 AMS 감축 시나리오

단위: 억 원

이행 연도	베이스라인(A)	농업생산액의 5% 수준(B)	AMS 수준(C)	A-C
2004	14,900	14,900	14,900	0
2005	14,680	14,922	14,900	-221
2006	14,459	14,943	14,900	-441
2007	14,238	14,964	14,900	-662
2008	14,017	14,986	14,900	-883
2009	13,797	15,007	14,900	-1,104

나. De minimis 축소 시나리오의 영향

- De minimis에 관한 시나리오의 영향은 UR 농업협정의 이행 결과를 기초로 비사실적인 가정에 의해 접근함.
 - 미래의 농업 생산액과 보조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전의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산출함.
-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을 이행하면서 품목별 보조가 품목별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1995-2000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음.
 - 품목 특정한 보조가 품목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 이상인 품목은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등임.
- 시나리오 {14} 아래 지금과 같은 de minimis 규정이 유지된다면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등 제한된 품목에 대한 보조만이 AMS 산출에 포함될 것임.
 - 다만 1998년에 소고기에 대한 보조 비율이 거의 10%에 다다른 점과 2000년에 마늘과 기타곡물의 비율이 각각 8.2%와 8.1%를 차지한 사실은 국내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품목들이 새로운 AMS 감축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시사함.

표 9. 연도별 de minimis 활용 현황

연도	생산액 대비 품목별 보조 비율				
	1% 미만	1~3%미만	3~5%미만	5~10%미만	10% 이상
1995	보리맥, 팥,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마늘, 밤, 인삼, 돼지고기, 달걀, 가금육, 채소, 약용, 고추, 버섯, 감자	콩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1996	보리맥, 콩, 팥, 밤,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마늘, 감자, 돼지고기, 채소,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인삼, 소고기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1997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마늘, 감자, 돼지고기, 채소,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콩, 밤, 인삼		소고기, 기타곡물	쌀, 보리, 옥수수, 누에고치
1998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마늘, 감자, 돼지고기, 채소,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콩, 밤, 마늘	인삼	소고기	쌀, 보리, 옥수수, 누에고치, 기타곡물
1999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감자,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육, 채소, 달걀, 화훼류, 고추, 버섯	콩, 밤, 인삼		옥수수	쌀, 보리, 누에고치, 기타곡물
2000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자, 돼지고기, 소고기, 채소, 달걀,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고구마, 파, 당근, 대추, 기타과실류	콩, 밤, 인삼, 양파, 참다래		옥수수, 누에고치, 마늘, 기타곡물	쌀, 보리, 유채
'95-'00 평균	보리맥, 고구마, 파, 당근, 감, 대추, 기타과실류,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돼지고기, 가금육, 달걀, 감자, 채소류,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콩, 양파, 참다래, 마늘, 밤, 인삼	소고기	기타곡물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주:1. 기타곡물은 밀, 메밀, 조 등이고 기타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자두 등임.

2. 1997-99년에 유채의 생산액 자료가 없어 그 비중을 산출하지 못함.

- De minimis의 규정이 지금의 선진국에 적용되는 기준처럼 품목별 농업 생산액 대비 보조 비율을 5%로 강화시키는 시나리오 {15}의 경우 기존의 AMS 대상 품목 이외에도 마늘과 기타곡물이 새로운 AMS 품목에 포함될 수 있음.
 - 1997-98년에 소고기에 대한 보조는 각각 1,953억 원과 1,831억 원으로 생산액 대비 각각 9.3%와 10%를 기록했으나, 1999-2000년에 보조액 비율은 각각 1% 미만을 나타냄.
 - 2000년에 마늘과 기타곡물의 보조 규모는 각각 483억 원과 8억 원으로 생산액 대비 각각 8.2%와 8.1%를 기록함.
 - 따라서 1995-2000년의 이행기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de minimis의 기준이 생산액 대비 5%의 보조 규모로 강화된다면 잠재적으로 소고기, 마늘, 기타곡물 등에 대한 기준 수준 이상의 보조가 AMS 산출에 포함될 수 있음.

- De minimis가 폐지되는 시나리오 {16}의 경우에 총 AMS에 추가될 보조 규모는 <표 10>과 같음.
 - 1995-2000년에 de minimis가 폐지됐다는 비사실적 가정아래 AMS 초과 규모를 산출한 결과 최소 1,637억 원(1999년)에서 최대 5,667억 원(1997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총 AMS 초과 규모가 총 AMS 양허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8%로 산출돼 특정 연도의 경우 de minimis 폐지가 총 AMS 감축 이행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음.

표 10. De minimis 폐지가 총 AMS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 원

	양허 AMS	현행 AMS	de minimis	시나리오 {16}	AMS 초과
1995	21,826	20,754	2,822	23,576	1,751
1996	21,056	19,674	3,438	23,112	2,056
1997	20,287	19,400	6,553	25,953	5,667
1998	19,517	15,628	7,836	23,464	3,947
1999	18,748	15,519	4,865	20,384	1,637
2000	17,978	16,909	5,297	22,206	4,228

다. 시사점

- 총 AMS의 감축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것은 UR 방식의 점진적인 감축임.
 - 그러나 UR 방식이라 하더라도 총 AMS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예: 시나리오 {2} 아래 AMS 감축률 50%) 큰 폭의 AMS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 AMS 양허 수준의 90% 이상을 활용하는 우리나라에 불리함.
- 품목별 AMS 감축 방식은 그 감축 규모 측면에서 총 AMS 감축 방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탄력적인 농정 대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접근 방식이 불리함.
 - 총 AMS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총 AMS 감축과 품목별 감축 사이에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음.
 - 그러나 국내 수급여건의 변화로 특정 품목에 대해 보조 증액이 필요할 경우 품목별 AMS 설정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총 AMS 감축 방식이 더 유리함.
 - 실제로 이행기간(1995-2000년)에 기준(base) 총 AMS 산출에 포함됐던 콩에 대한 보조는 한 번도 현행 AMS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에

누에고치에 대한 보조는 현행 AMS에 새롭게 포함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행 경험은 국내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 AMS에 기초한 감축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나타냄.

- 총 AMS 감축의 이행기간을 단기(예: 9년에서 5년으로)로 설정하는 것은 AMS 감축 폭을 확대하는 것(연평균 수치로 환산한 결과)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중장기적인 국내 농정 수단이나 목표를 설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이행기간은 개도국 지위와 연계된 것이므로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총 AMS 산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로써 물가 상승률(inflation)의 반영은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임.
 - 현행 총 AMS 산출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실질 AMS는 더욱 커져 AMS 감축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에 유리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95-2000년에 연평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7%이므로 연간 총 AMS 감축률이 그 만큼 상쇄되게 됨.
 - 현행 총 AMS 산출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의 반영은 경제이론과 논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다른 회원국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정당함.
- 현행 총 AMS 산출과 관련된 또 다른 사항은 실제 수매량 대 가격지 지 대상물량(eligible production)의 적용 사이의 차이임.
 - 우리나라는 관리가격에다 실제 수매물량을 곱해 현행 AMS를 산출하고 있으나, 미국과 호주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쇠고기 분쟁에서 WTO 패널은 이러한 AMS 산출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정함(2000년 6월의 최종 보고서).

- 실제 수매량 대신에 WTO 기준인 가격지지 대상물량(eligible to receive the applied administered price)을 가지고 현행 AMS를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AMS 감축 폭은 더욱 늘어나게 됨.
 - 예를 들면, 1997년에 소고기의 경우 실제 수매량은 35,127톤인 반면에 가격지지 대상물량은 52,615톤으로 평가돼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의 가격지지 차이는 1,020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소에 대한 보조는 관련 생산액의 10%를 초과해 de minimis가 아닌 감축대상 AMS로 분류했어야 옳다고 지적됨.
 - 2000년도 현행 총 AMS 산출에 포함된 품목 가운데 쌀, 보리쌀, 콩, 옥수수, 유채, 돼지, 마늘 등이 가격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품목들에 실제 수매량이 아닌 가격지지 대상물량을 적용한다면 현행 총 AMS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De minimis 규정이 강화되어도(예: 품목별 생산액 대비 10%에서 5%로) 현행 총 AMS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지금의 품목별 AMS 구조는 주로 농업 생산액 대비 1% 이하 또는 10%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1%~10% 사이로 새로운 de minimis 기준이 설정되어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게 됨.
 - De minimis가 폐지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보조가 현행 총 AMS 산출에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감축대상 AMS 수준은 큰 폭으로 늘게 됨.
 - 1995-2000년의 이행 결과는 이를 잘 나타냄.
 - EU는 선진국에 한정해 de minimis 폐지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됨.

정책연구보고서/ P 54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논의 동향과 과제

등록 제6-0007호(1979. 5. 25)

인쇄 2002년 월 일 발행 2002년 월 일

발행인 이 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쇄 (주) 02-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